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9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 상정일자 :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0월 12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임.

## □ 주요내용

###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수행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43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음.
- 출연금 내역 중 연구수행비는 기획연구과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증액이 없으며, 인건비는 신규 연구원 채용과 임금인상률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였음.
-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 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세종 1억 5,000만원),
-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1992년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도에 3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임.
-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해당 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됨.

# 1 대구경북연구원<sup>12)</sup> 출연금 : 43억원

## ○ 주요내용

- ▶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대구광역시	3,300	3,600	3,800	3,900	4,300	4,300	4,300
경상북도	3,300	3,300	3,900	3,800	4,300	3,800	4,300

※ 2020년 당초 출연액 46억원(코로나 19 위기 대응 감액)

## ○ 검토결과

-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sup>13)</sup>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sup>14)</sup>에 따라, 202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대구시 주관부서에서는 신규연구원 채용 등 인건비 상승과 기획연구과제 확대 추진 등을 사유로 43억원을 요구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의견대로 출연액을

12) 대구경북연구원 : '90. 6.17. 설립(원장-오창균) / 대구·경북의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 개발하고, 지역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13)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14) 제3조(출연금) ① 시 및 구·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확정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모로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여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10. 6. ~ 10.16.)에서 심의 예정임.

- ▶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한 시정지원 기능 강화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추진체계의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와 더불어 윤리경영 관리체계 및 사회적가치 목표설정 미흡, 고객 관점의 연구성과 평가방안 부재로 인한 평가결과 도출 및 환류의 신뢰성과 공정성 부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한다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션과 실행계획 수립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또한,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미래비전 제시와 정책대안 연구·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수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sup>15)</sup> : 2억 5,000만원

### ○ 주요내용

-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출연금	200	150	200	200	200	250	250

### ○ 검토결과

- ▶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sup>16)</sup>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광역시·도별로 균등 분담을 요청하였으며,  
 ※ 16개 시도 : 2억 5,000만원, 세종시 : 1억 5,000만원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4. 9월 설립(원장-공석) /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연구, 연구용역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

16)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법정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연구 결과 제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매년 지적인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면적, 지방 재정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연액이 차등 분담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타 시·도의 2021년 출연계획액도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참고하여야 할 것임.

#### 〈 광역시·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0년	250	200	250	200	250	250	250	100
2021년	250	200	250	250	250	250	250	15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50	200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50	250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sup>17)</sup> 출연금 : 5,400만원

#### ○ 주요내용

-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 검토결과

- ▶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sup>18)</sup>과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sup>19)</sup>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평가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시비 5,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출연금	54	54	60	60	54	54

-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 1,4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하였으며,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7) 지방공기업평가원 : '92. 3. 9. 설립(대표-최치국) /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평가, 교육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18)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19)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sup>20)</sup> 출연금 : 3억 2,000만원

○ 주요내용

-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21)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2,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소하였음.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출연금	222	279	310	319	339	342	320

20) 한국지방세연구원 : '11. 2.28. 설립(대표-배진환) /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조사·교육

21)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출연액 3억 2,0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22)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제시 등 지방세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2)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20. 9. 8.개정, ‘21. 1. 1.시행)  
1. 1만분의 1.2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칙 제2조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참 고**

**출연 심의요구서**

**대구경북연구원**

<p><b>출연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대구경북연구원(재단법인)</li> <li>○ 대 표 : 오 창 균</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li> <li>• 인 력 : 정원 85명 / 현원 78명</li> <li>• 주요사업 : 정책연구사업, 정책대응 및 정보공유사업, 지역사회 소통협력사업, 대구경북 상생협력 연구지원 등</li> </ul> </li> </ul>																																																		
<p><b>출연금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출연 예정금액 : 4,300백만원(시비)</b></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0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4,300</td> <td><b>4,300</b></td> <td>4,300</td> <td></td> <td>4,30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1년</td> <td>3,500</td> <td><b>3,550</b></td> <td>3,550</td> <td></td> <td>3,550</td> <td></td> <td></td> </tr> <tr> <td>연구수행비</td> <td>1년</td> <td>550</td> <td><b>550</b></td> <td>550</td> <td></td> <td>550</td> <td></td> <td></td> </tr> <tr> <td>기관운영비 등</td> <td>1년</td> <td>250</td> <td><b>200</b></td> <td>200</td> <td></td> <td>2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4,300	<b>4,300</b>	4,300		4,300			인건비	1년	3,500	<b>3,550</b>	3,550		3,550			연구수행비	1년	550	<b>550</b>	550		550			기관운영비 등	1년	250	<b>200</b>	200		200		
구 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4,300	<b>4,300</b>	4,300		4,300																																													
인건비	1년	3,500	<b>3,550</b>	3,550		3,550																																													
연구수행비	1년	550	<b>550</b>	550		550																																													
기관운영비 등	1년	250	<b>200</b>	200		200																																													
<p><b>출연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경북 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지원 필요</li> </ul>																																																		
<p><b>근거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li> <li>○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출연금) ① 시 및 구·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li> </ul>																																																		
<p><b>지도감독 부서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 공동 출연기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시도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li> <li>○ 주요 사업으로 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연구조성사업, 대외 교류협력사업, 연구간행물 발간사업 등을 추진</li> <li>○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시·도 협의를 통하여 수립 중인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b>출연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단법인)</li> <li>○ 대표 : 공석(현재 김현호 부원장 권한대행)</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li> <li>• 인력 : 정원 112명 / 현원 89명</li> <li>•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행정 당면과제 조사 연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등</li> </ul> </li> </ul>																																																		
<p><b>출연금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250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0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250.0</td> <td><b>250.0</b></td> <td>250.0</td> <td></td> <td>250.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1년</td> <td>80.0</td> <td><b>187.5</b></td> <td>187.5</td> <td></td> <td>187.5</td> <td></td> <td></td> </tr> <tr> <td>경상비</td> <td>1년</td> <td>30.0</td> <td><b>35.0</b></td> <td>35.0</td> <td></td> <td>35.0</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업비</td> <td>1년</td> <td>140.0</td> <td><b>27.5</b></td> <td>27.5</td> <td></td> <td>27.5</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2021년부터 인건비 산정 시 기존 연구사업비에 포함되는 연구수행 인건비까지 구분 상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변경하였기에 2020년에 비해 인건비 크게 상승</p>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250.0	<b>250.0</b>	250.0		250.0			인건비	1년	80.0	<b>187.5</b>	187.5		187.5			경상비	1년	30.0	<b>35.0</b>	35.0		35.0			연구사업비	1년	140.0	<b>27.5</b>	27.5		27.5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250.0	<b>250.0</b>	250.0		250.0																																													
인건비	1년	80.0	<b>187.5</b>	187.5		187.5																																													
경상비	1년	30.0	<b>35.0</b>	35.0		35.0																																													
연구사업비	1년	140.0	<b>27.5</b>	27.5		27.5																																													
<p><b>출연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국가와 17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li> </ul>																																																		
<p><b>근거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li> </ul>																																																		
<p><b>지도감독 부서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연구과제 수행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 및 인건비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li> </ul>																																																		

**지방공기업평가원**

<p><b>출연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li> <li>○ 대표 : 최치국</li> <li>○ 일반현황 (소재지) 서울 서초구, (정원/현원) 49명/44명 (주요기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훈련 등</li> </ul>																																																											
<p><b>출연금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출연 예정금액 : 54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384 703 1426 99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0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54.0</td> <td>54.0</td> <td>54.0</td> <td></td> <td>54.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 등</td> <td>1년</td> <td>11.4</td> <td>20.2</td> <td>20.2</td> <td></td> <td>20.2</td> <td></td> <td></td> </tr> <tr> <td>주요 사업비</td> <td>1년</td> <td>42.6</td> <td>33.8</td> <td>33.8</td> <td></td> <td>33.8</td> <td></td> <td></td> </tr> <tr> <td>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td> <td>1년</td> <td>39.6</td> <td>26.0</td> <td>26.0</td> <td></td> <td>26.0</td> <td></td> <td></td> </tr> <tr> <td>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td> <td>1년</td> <td>3.0</td> <td>7.8</td> <td>7.8</td> <td></td> <td>7.8</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54.0	54.0	54.0		54.0			인건비 등	1년	11.4	20.2	20.2		20.2			주요 사업비	1년	42.6	33.8	33.8		33.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1년	39.6	26.0	26.0		26.0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	1년	3.0	7.8	7.8		7.8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54.0	54.0	54.0		54.0																																																						
인건비 등	1년	11.4	20.2	20.2		20.2																																																						
주요 사업비	1년	42.6	33.8	33.8		33.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1년	39.6	26.0	26.0		26.0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	1년	3.0	7.8	7.8		7.8																																																						
<p><b>출연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 정책연구 강화, 임직원 교육 지원, 시·도 및 지방공기업 설립·투자 타당성 전문 검토 등 평가원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과 지방공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li> </ul>																																																											
<p><b>근거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li> <li>○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li> </ul>																																																											
<p><b>지도감독 부서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92년)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li> <li>○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li>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4~5명 (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지원이라는 출연의 목적 달성 가능</li> </ul>																																																											

## ■ 한국지방세연구원

<b>출연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li> <li>○ 대표 : 배진환</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li> <li>• 인력 : 정원 92명 / 현원 62명</li> <li>•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ul> </li> </ul>																																																											
<b>출연금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320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0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342</td> <td>320</td> <td>320</td> <td></td> <td>320</td> <td></td> <td></td> </tr> <tr> <td>기관 운영비</td> <td>1년</td> <td>243</td> <td>221</td> <td>221</td> <td></td> <td>221</td> <td></td> <td></td> </tr> <tr> <td>주요 사업비</td> <td>1년</td> <td>99</td> <td>99</td> <td>99</td> <td></td> <td>99</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업</td> <td>1년</td> <td>51</td> <td>29</td> <td>29</td> <td></td> <td>29</td> <td></td> <td></td> </tr> <tr> <td>  자치단체지원</td> <td>1년</td> <td>48</td> <td>70</td> <td>70</td> <td></td> <td>7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342	320	320		320			기관 운영비	1년	243	221	221		221			주요 사업비	1년	99	99	99		99			연구사업	1년	51	29	29		29			자치단체지원	1년	48	70	70		70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342	320	320		320																																																						
기관 운영비	1년	243	221	221		221																																																						
주요 사업비	1년	99	99	99		99																																																						
연구사업	1년	51	29	29		29																																																						
자치단체지원	1년	48	70	70		70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li> <l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lt;20.9.8.개정, '21.1.1.시행&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만분의 1.2 (※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2021년은 1만분의 1.3을 적용)</li> <li>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li> </ol> </li> </ul>																																																											
<b>지도감독 부서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li> <li>○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li> <li>○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li> </ul>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연구원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연구원의 청사 현황은?</li> <li>○ 지방행정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 내역을 보면, 대구시의 출연금이 2억 5,000만원인데 반해 인천의 경우 2억원만 출연하였음. 사유가 있는지?</li> <li>○ 1984년 지방행정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성과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li> <li>○ 지방세연구원의 경우도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큰 성과는 없었던 것은 아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을 파악하여 개별 보고토록 하겠음.</li> <li>○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 심의 시에 타 시·도 출연 현황을 참고하여 출연액을 확정토록 하겠음.</li> <li>○ 매년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정책 연구 과제 1개의 성과물을 제공하고 있음. 대구시에 꼭 필요한 정책 연구 과제를 잘 발굴해서 출연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2022년 1단계 재정분권이 종료된 이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모아 지방세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음. 지자체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부 건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독려토록 하겠음.</li> </ul>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